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60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인요한・성일종・구자근

장동혁 • 권영세 • 박준태

조승환 · 조정훈 · 권영진

최수진 • 우재준 • 김도읍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 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.

그런데,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 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,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치료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,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8조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0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「근로기준법」"을 "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근로기준법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8조의2제1항"을 "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"으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"3일"을 "30일"로, "1일"을 "10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
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	지원) ①
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<u>「근로</u>	제18조
<u>기준법」</u> 제74조에 따른 출산	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, 「근
전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휴	로기준법
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	
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	
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	
상당하는 금액(이하 "출산전후	
휴가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	
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	②
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	
한도에서 <u>제18조의2제1항</u> 또는	제18조의2제1항, 제18조
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	<u>의3</u>
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	
본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	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
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	
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	
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	

가"라 한다)를 정구하는 경우
에 연간 <u>3일</u> 이내의 휴가를 주
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<u>1일</u> 은
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
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
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
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
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
변경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 략)

<u>30일</u>
<u>10</u>
일
,
②·③ (현행과 같음)